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190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18차,24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0. 4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18차2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의외 2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2,929.90㎡(확정측량결과에 따른 0.2㎡ 감소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8차2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조영민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안길 17, 201호(자은빌딩)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. 10. 01.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: 대지면적 0.3㎡ 감소
 - 1) 대지면적 : 21,674.20㎡(확정측량결과에 따른 0.3㎡ 감소)
 - 2) 지상32층/지하3층, 아파트6개동(475세대), 부대·복리시설 : 변경없음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: 변경없음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	
	계	60㎡미만	85㎡미만	98㎡이상~114㎡미만	114㎡이상
계	475	99	118	44	214
토지등소유자	258	-	-	44	214
일반분양	146	28	118	-	-
보류지	-	-	-	-	-
재건축소형(임대)	71	71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: 공원면적 0.1㎡ 증가

1) 신 설 : 도로 255.60㎡, 공원 1,000.10㎡(확정측량결과에 따른 0.1㎡ 증가)

2) 폐 지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시기 : 준공됨(2019.6.21.)

6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4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다.